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85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이연희 · 남인순 · 임미애
송재봉 · 김정호 · 한민수
김남희 · 박상혁 · 이광희
이정문 · 이춘석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자 양육비 채무자의 법적 의무로서,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 현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한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반함. 또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과도한 행정 절차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제도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금액이

소액이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 횟수로 나누어 이행한 양육비 채무 평균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1항제1호 중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채무가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지급 신청인이”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 단서 중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조사”로 한다.

제21조의8제2항제2호 중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을 “이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 중 “신청인에 대하여”를 “신청인에게”로, “소득·재산”을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로,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를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을 “이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재산 등에 관한”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서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출입국·병무·교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

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1조의11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 ----- ----- ----- ----- ----- -----.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u>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1. ----- ----- ----- ----- <u>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채무가 제21조의7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u> -----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u>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u>	<u><삭 제></u>

150 이하인 경우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

----- 조사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
다.

1. (생략)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
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
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
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
유가 상실된 경우

③ ~ ⑤ (생략)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
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
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
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이행하는-----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
한 조사) ① -----
-----신청인에게-----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② -----

-----이행-----

-----관련-----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

⑤ -----

-----가족
관계등록전산정보·출입국·병
무·교정-----

[illegible]

⑥ 이 행정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생 략)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
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
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
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
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
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
실을 알려야 한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삭 제>

<u>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u> 제27조(벌칙) ① <u>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③ (생략)	제27조(벌칙) ① <u>제17조제6항</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